

기안용지

본주기호 문서번호	은이 33120-1616 (전화: 774-8534)	시행상 특별취급	
보존기간	영구·준영구. 10.5.3.1.	시 장	
수신처 보존기간		7/23	
시행일자	91. 7	7/23	
보조 기 관	교통국장: 전 결	협 조 기 관	문서 통제
	운수2과장:		1991. 7. 24
	택시계장: -		발 송 인
기안책임자	김대근	(박동욱)	
경유 수신 참조	각 안 참 조	발 신 의 의	시 장
제 목	개인택시 양도양수 인가 업무 개선지침 시행		
(제1안)			
수신: 수신처참조			
제목: 개인택시 양도양수 인가 업무 개선지침 시달			
1. 시장방침 제810호 (91.7.22)와 관련임			
2. 개인택시의 불법 양도·양수를 예방함으로써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개인택시운전자의 수존유지를 위해 양수 희망자에 대하여 관할구청장의 사전자격			
심사제를 도입, 운전경력등 자격요건을 철저히 심사후 인가처리토록 "개인택시 양도			
양수 인가 업무 개선 지침"을 시달하니 자체세부 시행계획을 수립, 제도개선에			
다른 내용홍보와 시행에 철저를 기할것			

1505-25(2-1)일(1)각

85. 9. 9. 승인 "내가아끼 종이 한장 늘어나는 나라살림"

190mm x 268mm 인쇄용지 2급 60g/㎡

가 40-41 1990. 5. 28

첨부: 개인택시 양도양수인가 업무개선 지침. 끝.
수신처: 시구 1 - 22(지역교통과장), 작동차간택사업소장.
(제2안)
수신: 서울특별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조합 이사장
제목: 개인택시 양도양수 인가업무 개선지침 통보
1. 개인택시의 불법 양도양수를 예방하으로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개인택시 운전자의 수준유지를 위해 양수 희망자에 대하여 관할구청장의 사전자격
심사제를 도입, 운전경력등 양수자에 관한 자격 요건을 심사후 인가처리로써 개인
택시 양도, 양수 업무개선 지침을 통보하오니 내용홍보와 시행에 착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개인택시 양도.양수 인가업무 개선지침. 끝.
(제3안)
수신: 수신처참조
제목: 회의소집
1. 개인택시 양도양수 인가업무 개선 시행에 따른 관계관 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니 시간지켜 참석할것
가. 일 시: '91. 7. 25. 16:00
나. 장 소: 교통국 회의실(10층)

개인택시 양도·양수 인가업무 개선지침

운수2과장	교통국장	부시장	시장
			

310



서울특별시(운수2과)

개인택시 양도·양수 인가제도 개선안

1. 목 적

개인택시 양도·양수 인가체계를 심사기능과 인가 처리 기능으로 분담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양수자의 사전자격 심사제를 도입, 공정한 심사로 무자격자의 양도양수를 사전에 방지하고, 택시운전자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신속한 처리로 민원발생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고,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여 능률을 제고 시키고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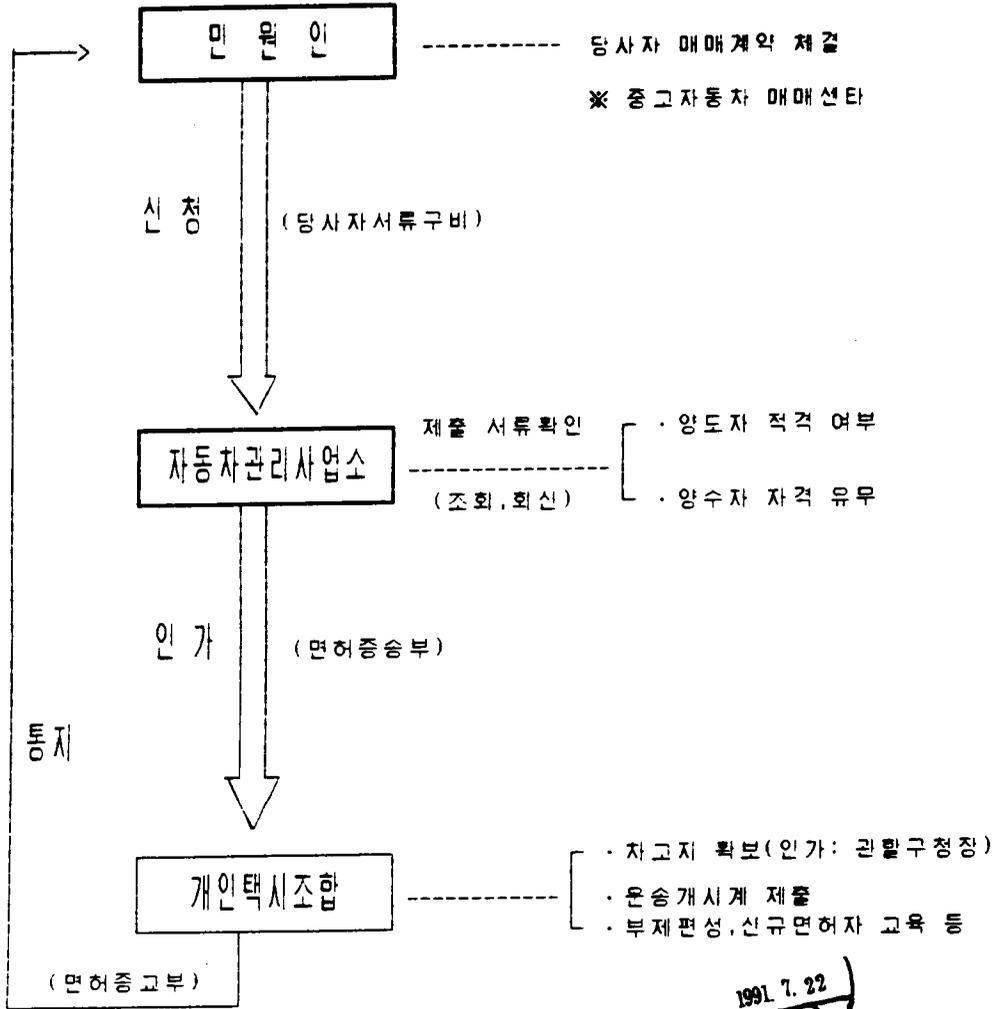
- 법적근거 : 운수사업법제28조, 동법시행규칙제15조, 동 26조,

2. 실 태

- 현행 양도·양수 인가처리 절차 ---- 자동차관리사업소('85.2.1부터시행)
 - 민원인의 신청에 의거 운전경력, 사고유무등을 당해증명 발급권자에게 사실여부를 조회하여 적격여부를 판별하므로써 발급권자가 공신력이 없는 법인 특히 사인이 경력증명을 불법적으로 발행하였을 경우에도 이를 확인 할 수 없는등의 문제점이 있음. (처리체계도 별첨)
- 신규면허 처리절차 ----- '88년도 부터 시행(거주지구에서 심사)
 - 신규면허대상자는 해당서류를 거주지관할구청에 접수하고 각구에서는 별도심사만을 편성하여 당해증명에 관한 발급권자의 정당한 발급 여부를 면지출장, 실사, 조회등을 통하여 엄격한 심사후 적격 여부를 판단하므로써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신청자에 대한 구별 심사결과를 본청에서 일괄 수합한 후 순위등급별로 전신입력 처리하여 면허 예정대수 범위내에서 면허하고 있음.

1991. 7. 29
시장

○ 현행 처리 체계도



1991. 7. 22
시장

○ 임대. 양수 계약현황 ('85~'91.5)

구분 연도	개인택시 대 수	차 리 실 적				임도양수 비 율	비 고
		신 정	인 가	부 적 격	부 적 격 율		
계	32,957	9,463	(26.5%) 8,730	733	7.7 %	26.5 %	
'85	20,472	1,004	946	58	5.8	4.6	
'86	24,464	955	832	123	12.9	3.4	
'87	25,865	995	924	71	7.1	3.6	
'88	28,159	1,519	1,388	131	8.6	4.9	
'89	26,169	1,820	1,714	106	5.8	6.1	
'90	32,935	2,135	1,960	175	8.2	5.9	
'91	32,957	1,035	966	69	6.7	2.9	5.31현재

※ 년평균 1,500대 거래(4.7%)

○ 운전경력별 임대.양수 현황 -----91.5월 표본조사

- 신 정 : 234 건 (사업용 67, 비사업용 102, 사업용·비사업용 65)
- 인 가 : 228 건 --- (97.4%)
 - 사업용 경력 : 66 건 (28.6%)
 - 비사업용 경력 : 98 건 (43.0%)
 - 사업+비사업용 : 64 건 (28.1%)
- 부 적 격 : 6 건 (2.6%)

○ 내 부 서

- 7년간 8,730대(26.5%)가 임대.양수되어 고객 프리미엄의 형성으로 증가 추세에 있음.
- 특히 자가용자동차 운전경력자에게 상당수 (43%)가 임대.양수되고 있어 개인택시의 질적 저하요인(불법, 부당, 무질서등)이 되고있음.
- 따라서 불법, 부당, 무질서등으로 승객에 대한 서비스를 기대하기 곤란함
- 또한 택시운전경력에 의한 신규면허 취득보다 자가용운전경력에 의한 임대.양수가 상대적으로 수월(원화된 경력)한 편임.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택시운전자가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니 자가용 운전경력자에게 면허가 발급되는 것은 근본 취지에 있어서도 역행

시장

3. 현행제도의 문제점

- 선매매 후인가(先買賣,後認可)로 자동차관리사업소에서 인가 신청후 서류의 하자
로 인하여 부적격자로서 당사자간에 손해발생은 물론 적격을 입증하기위한 경력
조작(또는 결탁) 가능성이 심존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정당한 자격을 가진자만이
사용해야 할 권인계약서가 무자격 당사자간에도 규제없이 사전에 사용되고 있음.

※ 자가용운전경력증명 허위발급사례 --- ('91.6.7 자동차관리사업소적용)

- 허위경력증명 3 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기간내에 자기자는 타인이 운전올하고, · 자신도 타인의 자동차를 운전

- 신규면허는 "개인택시 면허에 관한 지침"에 의거 제출서류에 대하여 구자체심사
반을 편성하여 현지출장, 실사등으로 엄격한 심사를 통하여 무자격자에게 면허가
발급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으나,
- 양도,양수시에는 별도심사반을 편성하여 엄격한 심사를 하지 못하므로써(자동차
관리사업소의 청구민원의 성격과 인력,업무량등을 감안 할때 신규면허에 준한
엄격 심사후 인가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무자격자가 경력 조작에 의한
양도,양수의 가능성이 있으며, 신규면허와 양도,양수시의 운전경력 적용상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음.
- 또한 "운전기사 운전경력 인정등에 관한 지침"에 의거 자가용 자동차 운전
경력증명 발급은 객관적인 고용 관계 증거서류 없이 인우보증이나 담당공무
원의 판단만으로 운전경력을 인정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양도,양수 인가시에는 심사반을 편성하여 구비서류에 대한 현지출장,사실
조사,조회등을 통하여 심사하지 못하므로써 자동차관리사업소에서 인가에
따른 경력증명등의 구비서류에 대한 시비가 발생하는등 민원의 소지가 있음.
- 고객 프리미엄 형성으로 사업 면허의 상품화로 인하여 개인택시 운전기사의
질적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어, 불법,부당,무질서가 근절되지 않으
므로써 승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기대 할 수 없음.

1.00
시장

4. [자

- 발 인 : 저라기능을 전상사(구) 주인가 사업소) 제제로 개선
- 내 용 : 개인택시를 인수하고자 할 경우 인수자는 사전에 관할구청장에게 인수자로서 자격에 관한 심사신청서를 제출하고, 관할구청장은 즉시 심사를 실시하여 심사결과를 민원인과 자동차관리사업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자동차관리사업소장은 인수자로서 적격일 경우에만 영도.인수 인가처리

○ 방 법

< 민 원 인 > -----인수희망자

- . 인수자로서 자격(적격여부)을 관할구청장에게 사전 심사토록 신청(양식#1) 하여 심사결과 적격자로 확인되었을 경우에만 당사자간의 매매로 인한 영도.인수 인가 신청을 할 수 있고, 영도.인수인가 신청사에는 반드시 심사결과 통보서(적격자)를 첨부 하여야 함.
- . 영도자는 종전과 동일.

< 구 청 장 --- 거주지 관 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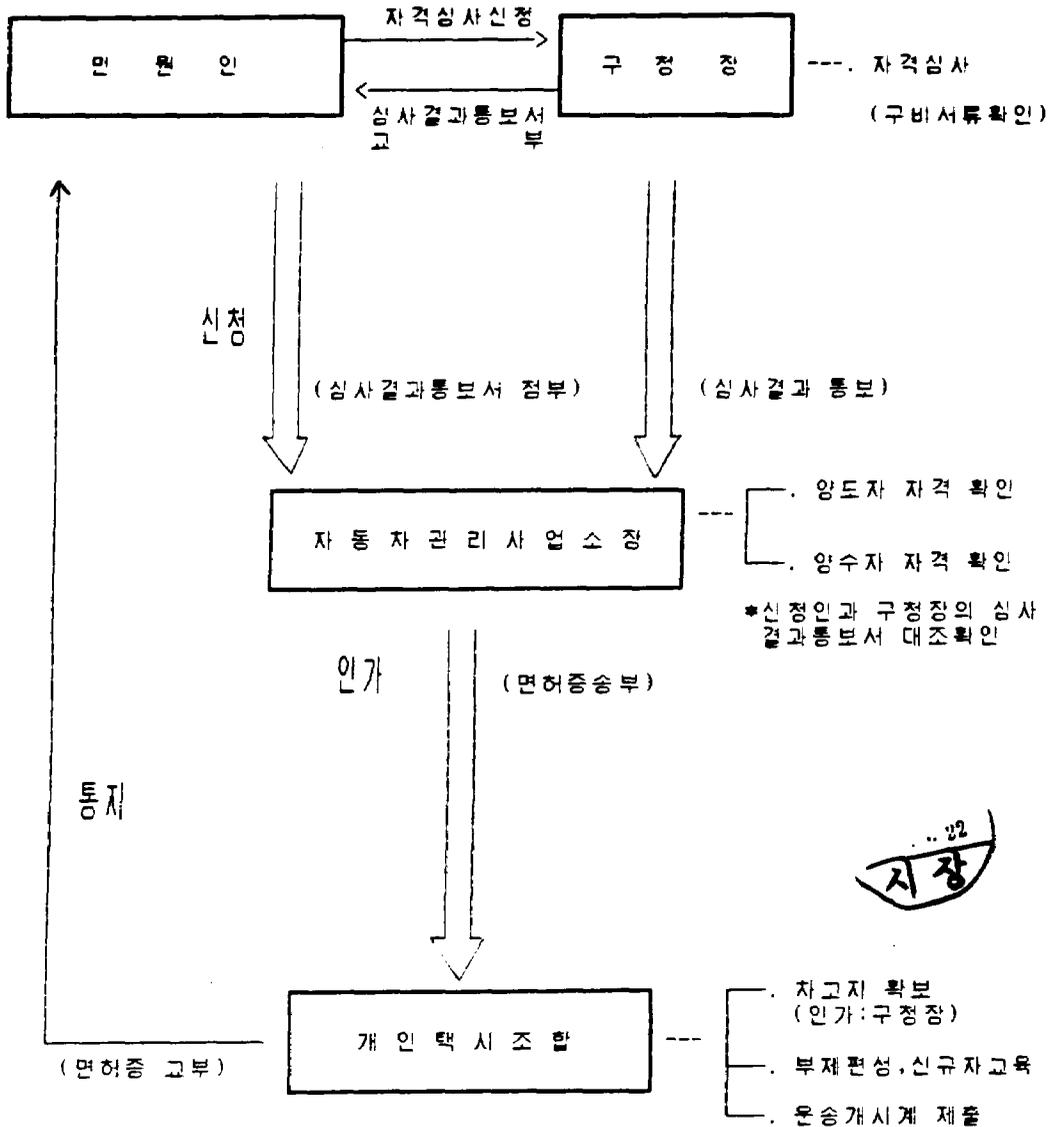
- . 인수자 자격심사를 위한 상설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인가) 심사반"을 구실정에 맞도록 편성운영.
- . 민원인이 개인택시 영도.인수를 위하여 사전에 자격심사 신청서(별첨#1)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개인택시 영도.인수 자격심사 처리대장"(양식#2)을 비치 기록하고, 접수와 동시에 개별 심사를 실시하여 심사결과(양식#3)를 민원인과 자동차관리사업소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함.

< 자 동 차 관 리 사 업 소 장 >

- . 영도.인수 인가신청 접수시에는 인수자의 자격에 관한 사전심사 여부(심사결과 통보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함.
- . 또한 민원인이 제출한 심사결과통보서의 관할구청장이 심사결과 통보한 내용 일치여부를 확인후 처리.
- . 기타사항은 종전과 동일.

..22
시 장

○ 산심사 후인가 처리 과정도



0 현 고

- . 양도·양수 인가 처리 업무를 기능별은 분담하므로서 과다 업무량을 분산처리 가능
- . 경력에 관한 자격시비로 인한 인원 발생 요인 제거
- . 불법 양도·양수의 사전예방
- . 개인택시 운전기사의 질적 수준유지로 서비스 향상기대
- . 신규면허외 양도·양수 인가의 신정경력에 대한 공평한 적용
- . 책임한계의 명확화
- . 장구민원의 신속한 처리

0 문제점 검토

- . 업무처리의 2원화로 양수자에게는 다소간의 불편 초래
- . 양수자 자격심사의 엄격화에 따라 양수자에게는 사실상 양도·양수 인가업무의 처리기간 연장 우려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자의 영세성을 감안 할때 사업면허를 사실상 재산권화로 인식하고 있어 양도·양수가 규제를 받을 경우에는 고액프리미엄에 의한 상품화가 곤란하여 일부 반발 우려

시장

5. 행정 사항

○ 시행에 따른 관계관 회의 개최

- 일 시 : '91. 7. 25, 15:00
- 장 소 : 10층 회의실
- 대 상 : 각구 지역 교통계장, **등록계장**.
- 안 건 : 개인택시 양도, 영수인가 개선 지침 시달

○ 개선 지침에 관한 내용 홍보

- 공 고 [시보게재
각구청, 조합 게시판에 게시
- 보도자료 제공 : 신문, 방송

○ 각 구청장 및 자동차관리사업소장은 자체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에 차질 없도록 조치 할 것.

1. 22
시장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수자격심사 신청서

처리기간

일

신청번호 : 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배전면허번호

표

번호

배

전

면

허

번호

무사고

배전경력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동 26조의 규정에 의거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양수코자 양수자로서 자격(적격, 부적격) 심사를
신청 합니다.

199

신청인

(인)

구 청 장 귀 하

구비서류

1. 경력증명서 (해당경력 구비서류)
2. 주민등록등본
3. 병적 확인서(주민등록초본)----- 40세이하자
4. 신원증명서
5. 건강 진단서 (국립병원 발행)
6. 각 시

증지
3000원

2002. 7. 22
시 장

수 신

제 목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수자격 심사결과 통보

1. 자동차운수사업법제28조, 동법시행규칙제15조, 동26조의 규정에 의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수하기 위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수자격 사전 심사를 신청한 의 심사결과를 아래와같이 알려드립니다(통보합니다).

가. 신청및 심사결과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업 전 면허종	면 허	종 류	발 리 단 령 일	발 리 단 령 일	
무 사고 경 력	<input type="checkbox"/> 사업용: <input type="checkbox"/> 비사업용:				
심 사	적 격	부 적 격 (사 유)	통 지 일 자	발 리 단 령 일	
결 과				○ ○ 구 제 호 (예 : 종 로 구 제 1 호)	

.. 22
시 장

○ ○ 구 제 호

21-16

개인택시 등록신청서 접수처 자격심사 처리대장

구 번 ()	심사결과		합								
						적 격	부 적 격	계	계 정	과 장	
구 번 ()											
구 번 ()											
구 번 ()											
구 번 ()											
구 번 ()											
구 번 ()											
구 번 ()											
구 번 ()											

1991. 7. 22
시 장

* () 안 인 원 수 접 수 연 회 가 자

개인택시 양도·양수 인가 업무 개선사항에 관한 공고

개인택시의 불법 양도·양수 예방으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양도·양수 인가 업무를 아래와 같이 개선하였기 시행공고 합니다.

1. 개선(인) : 양수자의 자격에 관한 사전 심사 실시(거주지 관할구청장)후 양도·양수 인가(자동차관리사업소장) 처리
2. 내 용 : 개인택시를 양수하고자 할 경우 양수자는 사전에 관할구청장에게 양수자로서 자격에 관한 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할구청장은 ~~개별~~ 심사를 실시하여 심사 결과를 민원인과 자동차관리사업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자동차관리사업소장은 양수자로서 자격이 적격일 경우에만 양도·양수인가 처리

3. 방 법

< 민 원 인 > ----- 양수 희망자

- . 양수자로서 자격(적격여부)을 관할구청장에게 사전 심사토록 신청하여 심사결과 적격자로 확인되었을 경우에만 당사자간의 매매로 인한 양도·양수인가 신청을 할수 있고 양도·양수인가 신청시에는 반드시 양수자 자격 심사결과 통보서(적격자)를 첨부하여야 함.

- . 양도자는 종전과 동일

< 거주지 관할 구청장 >

- . 양수희망자(민원인)가 개인택시 양도·양수를 위하여 사전에 자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개별심사를 실시하여 심사결과를 민원인과 자동차관리사업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자동차관리사업소장 >

- . 양도·양수인가 신청 접수시에는 민원인이 제출한 양수자 자격에 관한 사전심사결과 통보서와 관할구청장이 심사결과 통보한 내용의 일치여부를 확인후 처리

- . 기타사항은 종전과 동일



4. 양도. 양수 자격 요건

구분	법 적 요 건	구 비 서 류
양 도 자	<p><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④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허후 5년경과자 ○ 예 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 · 해외이민 또는 해외취업 · 61세이상 자로서 본인이 직접 운전 불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감증명서(용도: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용) ○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증 (원본) ○ 해외취업 확인서 또는 이주허가서 ○ 진단서 (국.공립병원장 발행) <p>※ 사실여부를 해당부서에 조회 확인후 처리</p>
양 수 자	<p><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④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허(인가)의 기본 요건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용: 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최근4년에 3년무사고 · 비사업용: 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최근7년에 6년무사고 (고용경력에 한함) · 사업+비사업용: 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최근7년에 3년 무 사고(비사업용은 고용 경력에 한하며※로환산) 	<p><양수자로서 자격 심사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등본 ○ 운전 면허증(사본) ○ 병적확인서 (주민등록등본) ---40세이하자 ○ 운전경력증명서(인감 등 관계 증빙서류) ○ 각 서 ○ 신원증명서 <p><인 가 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감증명서(용도: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양수용) ○ 양도증명서 (관인매매 계약서)사본 ○ 경력 심사결과 통보서(적격자에 한함) ○ 건강 진단서 (국.공립병원장발행) ○ 주민등록 초본

< 기타 인가 기준 >

- 운수사업법 제5조에 의한 걸격 사유가 없는자
- 서울시내에 3년이상 거주자로서 서울시내 운전 경력 3년이상 인자
- 모든 진단서는 국.공립 병원장 발행에 한함(허위또는 대리진단 사례색출)
-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개인택시 면허에 관한 지침을 준용하여 처리

1991. 7. 22
시 장

5. 시행일자 : '91. 8.

1991 . 7. .

서울특별시장

21-19

212



개인택시 양도·양수 인가 업무 개선·행위 관한 규정

개인택시의 불법 양도·양수 예방으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양도·양수 인가 업무를 아래와 같이 개선하였기 시행공고 합니다.

1. 개선방안 : 양수자의 자격에 관한 사전 심사 실시(거주지 관할구청장)와 양도·양수 인가(자동차관리사업소장) 처리
2. 내 용 : 개인택시를 양수하고자 할 경우 양수자는 사전에 관할구청장에게 양수자로서 자격에 관한 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할구청장은 지체없이 심사를 실시하여 심사 결과를 민원인과 자동차관리사업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자동차관리사업소장은 양수자로서 자격이 적격일 경우에만 양도·양수인가 처리

3. 방 법

< 민 원 인 > ----- 양수 희망자

- 양수자로서 자격(적격여부)을 관할구청장에게 사전 심사토록 신청하여 심사결과 적격자로 확인되었을 경우에만 당사자간의 매매로 인한 양도·양수인가 신청을 할수 있고 양도·양수인가 신청시에는 반드시 양수자 자격 심사결과 통보서(적격자)를 첨부하여야 함.

· 양도자는 종전과 동일

< 거주지 관할 구청장 >

- 양수희망자(민원인)가 개인택시 양도·양수를 위하여 사전에 자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개별심사를 실시하여 심사결과를 민원인과 자동차관리사업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자동차관리사업소장 >

- 양도·양수인가 신청 접수시에는 민원인이 제출한 양수자 자격에 관한 사전심사결과 통보서와 관할구청장이 심사결과 통보한 내용의 일치여부를 확인후 처리

· 기타사항은 종전과 동일

4. 양도, 양수 자격 요건

구분	법 적 요 건	구 비 서 류
양도자	<p><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8조①항 각종과 ○ 면허후 5년경과자</p> <p>○ 예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 · 해외이민 또는 해외취업 · 61세이상 자로서 본인이 직접 운전 불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감증명서(공도: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용) ○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증 (원본) ○ 해외취업 확인서 또는 이주허가서 ○ 진단서 (국.공립병원장 발행) <p>※ 사실여부를 해당부서에 조회 확인후 정리</p>
양수자	<p><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①항 각종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허(인가)의 기본 요건완화 · 사업용: 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최근4년에 3년무사고 · 비사업용: 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최근7년에 6년무사고 (고용경력에 한함) · 사업+비사업용: 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최근7년에 3년 무 사고(비사업용은 고용 경력에 한하며 1로 환산) 	<p><양수자로서 자격 심사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등본 ○ 운전 면허증(사본) ○ 병적확인서 (주민등록등본) ---40세이하자 ○ 운전경력증명서(인감 등 관계 증명서류) ○ 각 서 ○ 신원증명서 <p><인 가 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감증명서(공도: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양수용) ○ 양도증명서 (관인매매 계약서)사본 ○ 경력 심사결과 통보시(적격자에 한함) ○ 건강 진단서 (국.공립병원장발행) ○ 주민등록 초본

< 기타 인가 기준 >

- 운수사업법 제5조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자
- 서울 시내에 3년이상 거주자로서 서울 시내 운전 경력 3년이상 인자
- 모든 진단서는 국.공립 병원장 발행에 한함(히위 또는 대려전단 사례색출)
-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개인택시 면허에 관한 지침을 준용하여 처리

5. 시행일자 : '91. 8. 10

1991 . 7. 25

서울특별시

여-기